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72명(4급 2명, 7급 106명, 8급 160명, 9급 10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6급 106명, 7급 160명, 8급 104명)하면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0명(9급 30명)을 감축하고, 국세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1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2명) 중 1명(5급 1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1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5

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3.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2024년 2월 21일”을 “2026년 2월 21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96”을 “8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892”를 “87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79”를 “85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0,399”를 “20,1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399”를 “20,1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375”를 “20,159”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근로장려세제 운영	11명
2) 주택임대소득 관리	1명

2. 국세청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세무서)	73명
2) 근로장려세제 집행(지방국세청)	363명
3)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세무서)	68명
4) 변칙 상속·증여 차단(세무서)	51명
5) 악의적 채납자 강력대응(지방국세청)	59명

6)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세무서)	40명
7)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업무(지방국세청)	30명
8) 실시간 소득과약 업무(세무서)	489명

별표 4의2 중 “2024년 2월 21일”을 “2026년 2월 2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5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4년 2월 21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과를 둔다.	제41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 ----- ----- ---- <u>2026년 2월 21일</u>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96</u>	<u>876</u>	-20
•	•	•	
•	•	•	
일반직 계	<u>892</u>	<u>872</u>	-20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79</u>	<u>859</u>	-20
•	•	•	

[별표 3]

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0,399</u>	<u>20,183</u>	-216
일반직 계	<u>20,399</u>	<u>20,183</u>	-216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0,375</u>	<u>20,159</u>	-216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